

1. 개정이유

우리 부 관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부대시설 보수료 등의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화하게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
나. 관사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
정하기 위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

다. 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제재 내역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1)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동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

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조정협력과”를 “지역정책과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) ① 관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 (전기료·수도료·냉난방비·오물수거료 등)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1. 관사의 신축·개축·증축·리모델링 비용 등
2. 관사의 보일러·수도·가스·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
3.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제재사항) 사용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,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